

고성군의회 포상규칙안

(의안번호 제822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0. 24 정호용의원 외 10인
나. 회부일자 : 2003. 10. 24
다. 상정·의결일자 : 2003. 11. 6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의결

2. 제정이유

- 의회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의 의표가 되는 의회공무원 및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현저한 기관, 개인 또는 외국인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키 위함.

3. 주요골자

- 가. 포상 대상은 의회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의회공무원 및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현저한 기관, 개인 또는 외국인(안 제2조)
- 나.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감사패), 상장으로 구분 시행(안 제3조)
- 다. 표창장, 감사장(감사패)는 의회공무원 및 기관, 개인 또는 외국인에게 수여(안 제4조)
- 라. 상장은 집행기관, 또는 행사주관 기관의 추천과 요청에 의거 수여(안 제5조)
- 라.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안 제6조)
- 마. 포상을 요하는 대상자 있을때는 의원의 추천에 의거 본회의 심사의결을 받는다.(안 제7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규칙 제정 안은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표창 목적과 대상이 의회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의 의표가 되는 의회공무원 및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기관·개인 또는 외국인에게 수여하고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 기관의 추천과 요청에 의거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에서 입선한 경우와 학술·예술·체육·교육 훈련 등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타난 경우에 수여하는 것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포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기관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간접포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성군의회 포상규칙 제정 안은 의회와 직접 관련된 내부 포상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사무에 속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는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5. 질의 및 답변

- 문 : 군민에게 직접 포상은 할수 없습니까?
- 답 : 군민을 대상으로 직접 포상은 집행기관의 영역에 속하여 의회 월권 행위에 속하므로 직접 포상은 할수 없고 간접 포상만 할수 있습니다.
- 문 : 포상을 정기적으로 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 답 : 의회 개원 기념일입니다.

6. 토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3. 11. 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